

EU 집행위원회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쟁점과 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는 2025. 2. 26.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의 지속가능성 관련 다양한 규제 법령을 완화하는 내용의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입법 절차를 거쳐 위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EU 시장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 EU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국 기업 등이 직면하는 규제 리스크가 완화되고, EU 내 친환경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배경 및 주요 내용·쟁점을 개관하고, 이에 관한 최근 동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1.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도입 배경

EU는 그 동안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 즉 (1) 기업이 자사 및 공급망에 대한 인권 및 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CSDDD**(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2) 기업에게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의 공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 (3) 탄소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에서 제조된 제품이 EU 내로 수입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CBAM**(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운영해 왔습니다.

이처럼 EU는 그 동안 지속가능성 내지 ESG 관점에서 선진적인 규제제도를 갖추어 왔으나, 이러한 규제가 EU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및 중국에 비하여 EU의 성장세가 둔화되었다는 문제 의식 아래, 2025. 1. EC는 규제 간소화 등을 통해 EU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로드맵으로서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하였습니다. EU 경쟁력 나침반은 EU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목표로서 신기술 및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활성화, EU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한 혁신 촉진(미국·중국과의 혁신 격차 해소), 친환경 기술 및 산업 지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탄소 감축 및 경쟁력 강화 공동 로드맵),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및 시장 보호를 통한 경제적 안보 확보(의존도 완화 및 안보 강화)를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5대 정책 과제 중 첫 번째로 규제 합리화가 제시되었는데, EC는 CSDDD, CSRD 및 CBAM을 포함한 EU의 규제가 중소기업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해서

Related Areas

ESG

환경

에너지

Contact

손금주 변호사

02-528-5094

kjson@yulchon.com

윤용희 변호사

02-528-5284

yhyoon@yulchon.com

안정혜 변호사

02-528-5306

jhahn@yulchon.com

김현정 변호사

02-528-5150

hyunjeong@yulchon.com

김원진 변호사

02-528-5698

weonjinkim@yulchon.com

이민호 고문

02-528-5441

minholee@yulchon.com

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C는 지난 2월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에는 기존의 EU 지침(Directive) 및 규정(Regulation)을 개정하는 내용의 4개의 “개정안” 및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된 “개정안 초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¹⁾

- ① EU CSDDD 및 CSRD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²⁾
- ② EU CSDDD 및 CSRD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³⁾
- ③ 친환경 투자 활성화를 위한 InvestEU Regulation 개정안⁴⁾
- ④ CBAM의 규제 간소화를 위한 개정안⁵⁾
- ⑤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3개의 위임 규정⁶⁾에 대한 개정안 초안⁷⁾

2.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주요 내용 및 쟁점

가. CSRD 규제 완화

구분	주요 내용 및 쟁점
적용 대상 기업 축소	• (1) EU 기업: (i) 직원 수가 1,000명을 초과하고 (ii) 전세계 연 매출액이 5,000만 유로(또는 총자산 2,5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2) Non-EU 기업: EU 내 연 매출액이 4억 5,000만 유로를 초과하는 기업 → 기존 CSRD 적용 대상 기업 중 약 80%가 적용 범위에서 제외됨 • 위와 같이 적용 대상 기업이 축소하면 기존에 2026년부터 그리고 2027년부터 각각 공시 의무를 부담할 예정인 기업은 향후 적용 대상 기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이런 배경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 2년 동안 공시 의무를 유예함

1)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이란 여러 법령/규제를 하나의 법령을 통해 동시에 개정하는 방식의 법안을 의미합니다. EC가 발표한 각 개정안 및 개정안 초안, 관련 FAQ는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Omnibus I](#), [Omnibus II](#), [위임법률 개정안 초안](#), [FAQ](#)

2)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0 final 2025/0044 (COD)

3)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 COM(2025) 81 final 2025/0045 (COD)

4)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s (EU) 2015/1017, (EU) 2021/523, (EU) 2021/695 and (EU) 2021/1153 as regards increasing the efficiency of the EU guarantee under Regulation (EU) 2021/523 and simplifying reporting requirements - COM(2025) 84 final 2025/0040 (COD)

5)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Regulation (EU) 2023/956 as regards simplifying and strengthening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 COM(2025) 87 final 2025/0039 (COD)

6)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21/2178, (EU) 2021/2139 및 (EU) 2023/2486

7) 위 초안은 아직 채택되지 않았고, 의견수렴, 수정 절차를 거쳐 2025년 2분기에 채택될 예정입니다.

구분	주요 내용 및 쟁점
ESRS 간소화 및 자발적 공시 기준 마련	• 이중 중요성(Double Materiality) 기준은 유지 • 공시 부담 완화를 위해 산업별(Sector-Specific) 공시 기준은 삭제(공통 기준 및 주제별 공시 기준은 유지) • 데이터포인트의 항목 수를 줄이고, 기준을 명확하게 수정하며, 타 법령 준수와의 일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ESRS를 개선 • CSRD 비적용 대상 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을 마련할 예정 - EFRAG(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고자문 그룹)이 개발한 VSME(Voluntary Sustainability Standards for Micro Enterprises, 중소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 기준)을 토대로 작성될 것임 - 자발적인 지속가능성 공시를 하려는 기업이 사용하는 기준, CSRD에 따라 공시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이 협력사에게 정보를 요구할 때 활용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것임
인증 기준 완화	• CSRD: 제3자 인증 관련 초기에는 제한적 인증(limited assurance)을 도입하되 점진적으로 합리적 인증(reasonable assurance) 기준이 채택될 예정이었음 • 개정안: 제한적 인증만을 유지하고, 합리적 인증으로의 전환은 포기함
녹색분류체계 관련 공시 의무 완화	• CSRD 적용 대상 기업은 자사 사업활동의 EU 녹색분류체계 적합성(매출액 및 투자계획이 EU 녹색분류체계 규정에 마련된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을 자발적으로 공시함

나. CSDDD 규제 완화

구분	주요 내용 및 쟁점
적용 시점 연기	• CSDDD가 처음 적용되는 시점 및 회원국의 CSDDD 입법 기한이 각각 1년 연기됨 → 회원국은 2027. 7. 26.까지 CSDDD를 국내법에 반영해야 하며, 관련 규제는 2028. 7. 26.부터 점진적으로 적용될 예정 • EC는 기업의 규제 준수에 도움이 되도록 2026. 7.까지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예정
간접 협력사 대상 실사 의무 완화	• 원칙적으로 공급망 내 위험성 평가를 자사 및 직접 협력사를 대상으로만 진행하면 됨 • 간접 협력사에 대한 위험성 평가는 요구되지 않음(다만, 간접 협력사 단계에서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개연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해야 함)

구분	주요 내용 및 쟁점
정기 평가 의무 완화	• CSDDD: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매년 수행 • 개정안: 5년 이내의 주기로 수행(다만,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새로운 위험이 확인되었거나 기존 조치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함)
계약 해지 의무 조항 삭제	• CSDDD: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서 계약 해지 의무 조항 도입 • 개정안: 계약 해지 의무 조항 삭제(즉, 부정적 영향 예방에 대한 계획이 준수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한도에서는 협력사와 계약을 유지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 없음)
협력사의 부담 완화	•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력사(중소기업 등)에게 “CSRD 비적용 대상 기업을 위한 자발적 공시기준”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보를 요구하지 못함 → 기업이 CSDDD 준수를 명목으로 협력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축소되고 명확해질 것이므로 협력사의 규제 대응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
의무 위반 제재 수준의 완화	• 민사책임 조항(노동조합/NGO가 피해자를 대신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 등) 삭제 →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민사책임 제도를 설계하도록 허용함 • 전세계 매출액에 비례해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삭제 → EC는 향후 회원국과 협력하여 과징금 부과 기준, 범위 등에 관해 결정할 예정

다. InvestEU 등 투자 활성화 제도

녹색성장, 고용 창출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InvestEU 프로그램에 대한 EU 차원의 보조금 증진 및 회원국의 자금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고,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 등의 보고 의무가 완화되므로,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라.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위임입법에 대한 개정안 초안

EC는 위 개정안들과 함께 EU 녹색분류체계 규정 관련 위임규정들에 대한 개정안 초안을 함께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위 개정안 초안에 의하면, 기업의 KPI 및 매출액에 영향이 크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 EU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고, 기업활동의 녹색분류체계 적합성을 공시할 경우 준수해야 하는 템플릿 및 데이터포인트가 간소화하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향후 절차 및 시사점

위 각 개정안에 대해서는 EU 의회(EU Parliament) 및 EU 이사회(EU Council)를 통해 입법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두 기관 모두 각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으므로, 진행 경과에 따라 EC, EU 의회, EU 이사회는 향후 각 개정안 관련 수정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에는 다양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안 별로 입법 절차, 속도 등이 상이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EU CSDDD 및 CSRD의 적용 시기를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의 경우 신속 채택을 위한 절차가 도입되어 다른 개정안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도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 국민당(EPP: European People’s Party)의 경우, 옴니버스 법안을 신속 채택 절차를 통해 빠르게 통과시키고자 하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에서 한국 기업은 향후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의 진행 절차 및 쟁점 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개정안별로 세밀하게 분석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 법안을 통해 CSDDD 및 CSRD 등 지침이 개정된 이후에도 각 회원국에서 구체적인 국내 입법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관련 위임 법률이 어떻게 마련될 것인지에 관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